

영업 휴업 · 재개업 · 폐업 신고서

※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				
신고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		
	주소	전화번호					
영업장	업소명	영업의 종류					
	소재지						
	허가·신고번호	전화번호					
신고내용	신고유형	[] 휴업	[] 재개업	[] 폐업			
	폐업(재개업)일	년	월	일			
	휴업기간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	사	유					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귀하

구비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2.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[예: 도축업(소)],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 · 유가공업 · 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[예: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)],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 ·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· 우유류판매업 ·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· 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[예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.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